

# 노령층 지원서비스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이 많으시죠?

-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 치매가 걱정될 때
-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 01

##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드려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 제도

####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201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

#### 2. 지원내용

매월 최대 202,600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202,6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324,160원  
※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은 최소 2만원까지 차등하여 받게 됩니다.  
※ '16.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최대 금액 인상 예정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이 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알려 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를 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과거에 탈락이 되셨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노후준비 서비스

#### 1.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내 거주 국민)과 수급권자 등

#### 2. 지원내용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하여 건강, 재무, 대인관계, 여가 등에 대한 상담, 연계, 사후관리,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 노후긴급 자금 대부

#### 1.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2. 지원내용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의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고 75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 주택연금 제도

### 1. 지원대상

주택을 소유(합산가액 9억 이하)하고 있으나 다른 소득마련 방안이 없어 노후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60세 이상 어르신

### 2. 지원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보증하여 드립니다.

※ 집값이 3억원인 경우 60세 가입자는 매월 682,00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86,000원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중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15.12월 가입 기준)

※ 일정한도 내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인출하여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홈페이지(www.hf.go.kr)

#### 알려드립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채무인수하여 계속 이용하실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 이사 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산절차를 통하여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은퇴금융 아카데미

### 1. 지원대상

은퇴준비에 필요한 금융상품 및 재무설계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민

### 2. 지원내용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은퇴준비에 필요한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에 관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홈페이지(www.hf.go.kr)

#### memo

# 02

##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 자리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노인 사회활동 지원

#### 1. 지원대상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재능나눔활동 : 만 65세 이상
- 취업창업활동 : 만 60세 이상(소득기준 없음)

#### 2. 지원내용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및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 공익활동 : 월 20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30시간 이상)  
\* 노노케어, 취약계층 돌봄, 경륜전수활동 등
- 재능나눔활동 : 월 10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창업활동 : 노인일자리 취업창업사업단에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노인일자리 생산품(반찬, 셔플록 등) 제조·판매, 아파트 택배 등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자주 하는 질문

-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수당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활동수당은 기초연금대상자 선정시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 03

##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어르신들에게 활동 및 여가·문화·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 1. 지원대상 일반 노인

#### 2. 지원내용

동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문화 향유를 돕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음껏 참여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별도 신청 없이 이용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1. 지원대상

우울증상이 있는 등 사회관계 활성화가 필요한 독거노인

#### 2. 지원내용

봉사, 취미활동, 운동, 일거리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신청(☎1661-2129)

##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 1. 지원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 2. 지원내용**  
문화학교(악기,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 문화나눔봉사단, 문화동아리 등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문화원, 문화의집 등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제출(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02-704-4332)  
\* 매년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내 주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층 정보화 교육

- 1. 지원대상**  
55세 이상
- 2. 지원내용**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홈페이지 제작법 등의 과정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의 후 신청(☎064-909-3015)
  - 정보화교육기관 안내(국민정보화 교육 [www.itstudy.or.kr](http://www.itstudy.or.kr))

## 온라인 정보화 교육

- 1. 지원대상**  
전국민
- 2. 지원내용**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홈페이지 제작법, 스마트폰 활용, IT 자격증 과정 등 80개의 수준별 온라인 정보화교육 과정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온라인정보화교육(☎064-909-3021)  
※ 연중 신청 가능

memo

# 04

## 치매가 걱정될 때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치매검진 지원

#### 1. 지원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516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

#### 2. 지원내용

- 보건소(전국 254개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국 230여 개소 협약 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진단·감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8만원)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종합병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지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또는 치매지원센터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4인기준 516만원) 이하인 어르신

#### 2. 지원내용

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memo

# 05

##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어르신들의 안질환 예방 및 치료를 지원하고 치아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노인실명 예방

#### 1. 지원대상

- 노인 안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3만 4,860원) 이하인 경우(초생활수급자 우선)

#### 2. 지원내용

- 노인 안검진 : 정밀안검사(1차), 안압·굴절검사(2차) 등을 지원 합니다.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양측)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양측),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지원
- 노인 개안수술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 백내장 등 안질환 약 24만원, 망막질환 약 105만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노인틀니 지원

#### 1. 지원대상

- 완전틀니 : 만 70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70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
- ※ 2016. 7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2. 지원내용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클래스프(갈고리형 연결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적용하여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 3. 신청방법 및 문의

-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노인임플란트 지원

#### 1.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 ※ 2016. 7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알려드립니다

- 부분 무치악이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 2. 지원내용

- 치과 임플란트 시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하여 해당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평생 2개)
-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 3. 신청방법 및 문의

- 건강보험 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자주 하는 질문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 2. 지원내용

거주지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폐렴구균 무료접종, 보건소 및 15,000여개 참여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전국 보건소 및 15,000여 지정 의료기관(인플루엔자에 한함) 방문(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자주 하는 질문

-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 간에는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간격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 예진 후 피접종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memo

.....

.....

.....

.....

.....

.....

.....

.....

# 06

##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서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4인기준 774만원) 이하인 어르신

※ 단기가사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어르신

### 2. 지원내용

유형	세부 지원내용
방문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주간보호	보호시설에서 여가활동, 물리치료·언어치료, 급식 및 목욕, 가족 교육 및 상담 등 제공
단기 가사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2. 지원내용

건강상태 및 정기적인 안전확인, 운동·영양관리,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 1회 직접방문 및 2~3회 전화확인, 월 2회 생활교육 실시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독거노인 중 치매환자 또는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 2. 지원내용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안전확인, 가정 내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도와 드립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 센터 ☎129)

##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 1. 지원대상

학대피해를 당한 노인

### 2. 지원내용

- 노인 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전화·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대피해 노인 상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쉼터를 운영합니다.
-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노인 학대 상담을 통해 지원(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 ☎129)

memo

# 07

##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교통비에서 공공요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요금감면으로 어르신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요금감면 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
교통비	65세 이상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 무료 이용</li> <li>-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li> <li>- 통근열차 50% 감면</li> </ul> </li> </ul>	이용시 신분증 제시(코레일 ☎1544-77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li> </ul> </li> </ul>	이용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운임 20% 감면</li> </ul> </li> </ul>	이용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문화 활동비	65세 이상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li> <li>•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li> <li>• 그 밖에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li> </ul>	입장시 신분증 제시
국민 건강 보험료	지역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 6천만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li> <li>- 재산 9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경감</li> <li>-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10% 경감</li> </ul> </li> </ul>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각종 공공 요금	노인 복지 시설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전기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memo

# 장애인 지원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안할 때
- 장애인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 각종 요금을 감면 받고 싶을 때



# 01

##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안할 때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을 드려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장애인연금

#### 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 장애 1, 2급 및 3급 중복지장애

\*\* '16년 기준,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 2. 지원내용

- 기초급여 : 월 최대 20만 2,600원을 지급합니다.(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 부가급여 : 연령과 소득에 따라 2만원~28만 2,60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부가급여〉 (‘15년 기준)

구 분	만 65세 미만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8만원	28만 2,600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7만원	7만원
차상위 초과	2만원	4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액 차감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차감분('15년 기준, 기초연금 202,600원)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장애인연금은 미차감)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자주 하는 질문

●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부가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하여 지급되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을 별도 신청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음.

### 장애수당

####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만 18세 이상의 경증(3~6급) 장애인

#### 2. 지원내용

1인당 월 4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2만원 지급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애아동 수당

####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1~6급)

#### 2. 지원내용

구 분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20만원	월 10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월 10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7만원	월 2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02

### 장애인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출산과 보육, 교육을 위한 현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1. 지원대상**  
출산한 1~6급의 등록 여성장애인(만 4개월 이상 유산·사산 포함)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2. 지원내용**  
아이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자주 하는 질문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지원목적은 달라하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 1. 지원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 2. 지원내용**  
중증 및 경증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  
(중증 62만 7천원, 경증 55만 1천원)을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1.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2세 미취학 장애아동
- 2. 지원내용**  
어린이집 보육료(종일반 40만 6천원)를 지급합니다.  
(종일반, 방과후,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1. 지원대상**  
초등학교에 다니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 2. 지원내용**  
방과후에 하루 4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월 20만 3천원)를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애아동 양육수당

- 1.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 2. 지원내용**
  - 0~36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 36~84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 1. 지원대상**  
장애아 무상보육료(취학전) 지원을 받는 만 0~12세 장애아동
- 2.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종일제 보육시간(7:30~19:30)을 경과\*하여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합니다.(지원단가 3,800원, 지원한도액 매월 22만 8천원)  
\*시간연장보육(19:30~24:00, 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야간보육(19:30~익일07:30), 24시간보육(07:30~익일07:30), 휴일보육(공휴일)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1. 지원대상**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4인 기준 516만원) 이하인 가구의 만 18세 미만 1~3급 중증 장애아동
- 2. 지원내용**  
장애아동돌보미가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아동 1인당 연 480시간, 1회 2시간 이상 지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memo

.....

.....

.....

.....

.....

.....

.....

.....

.....

.....

.....

# 03

##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장애인이 보다 자유롭게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 1. 지원대상**  
장애등급이 1~3급인 대학생  
※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 장애등급이 4~6급인 대학생도 가능
- 2. 지원내용**  
장애대학생의 대학 내 이동 및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학습도우미를 지원합니다.  
※ 대학에서 도우미를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15학년도 2,750명 활동)
- 3. 신청방법 및 문의**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문의 후 신청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http://doumi.kcce.or.kr>)  
교육부(☎044-203-6954)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1.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 2. 지원내용**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도청 장애인담당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 1.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2. 지원내용**  
치료지원 제공기관(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3. 신청방법 및 문의**  
소속 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교육부 ☎044-203-6562)

###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 1.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 2. 지원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을 지원합니다.(중증장애학생 우선 지원)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정 학부모의 사회참여활동 확대를 위한 종일반 운영을 지원합니다.  
(방과후학교와 종일반 중복지원 불가)
- 3. 신청방법 및 문의**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교육부 ☎044-203-6560)

## 장애인 정보화교육

### 1. 지원대상 모든 장애인

### 2. 지원내용

- 방문 정보화교육 : 방문 정보화강사가 교육신청자 가정에 방문하여 1:1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교육생 1인당 연간 60시간 이내 교육지원, 교재 및 교육비 전액 무료)
- 집합 정보화교육 : 전국 148개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홈페이지 제작법 등 정보화교육을 지원합니다.(교재 및 교육비 전액 무료)  
※ 집합 정보화교육(3~12월), 방문 정보화교육(연중)

### 3. 신청방법 및 문의

- 방문 정보화교육 : 온라인(www.itstudy.or.kr) 또는 전화 신청(연중)
- 집합 정보화교육 :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기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도우미 상담실(☎1588-2670)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IT 긴급서비스(연중)
  - 지원대상 : 모든 장애인
  - 지원내용 : 컴퓨터 수리·SW설치, 정보통신기기 활용법, 정보화교육 수혜방법 및 정보화서비스, 전자민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화상담 및 방문서비스(무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도우미 상담실(☎1588-2670)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1.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 2. 지원내용

장애학생 교수·학습자료,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 관련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지원 내용
에듀에이블	www.eduable.net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등 특수교육 관련 자료 제공
장애이해사이트	edu.knise.kr	일반교사 및 학생 등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자료 및 동영상 제공
이압	blind.knise.kr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EBS 방송 강의, 점역 등 대체자료 제공

###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041-537-1485)

memo



# 04

##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지원

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 1. 지원대상

- 15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으로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서울맞춤훈련센터 및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에서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실시기관에서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

#### 2. 지원내용

직업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훈련준비금, 훈련참여수당,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훈련준비금	6일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 4만원 지급 (입학시 1회 한하여 지급)
훈련참여수당	1개월 및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제외)에게 월 5만원 지급
가계보조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월 7만원 지급
가족수당	가계보조수당을 받는 사람 중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이 있는 경우 3명까지 1명당 3만원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5만원 지급
식비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에 의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식사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6만원 지급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운영부  
(☎1588-1519, www.kead.or.kr)

#### 자주 하는 질문

-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직종은 표준훈련시간 700시간(약 6개월), 1,400시간(약 1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훈련직종의 표준시간을 기준으로 개인의 훈련진행 정도 및 훈련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라 훈련시간은 가감될 수 있으며, 전체 훈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하여 훈련을 받다가 적성에 안 맞는 경우 다른 훈련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훈련생이 훈련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훈련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교사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직업능력개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훈련직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을 받고 수료한 후 다시 재입학이 가능한가요?**
  - 양성과정(훈련기간 1개월 이상이고 표준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을 수료하거나 중도탈락한 훈련생의 경우, 수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에 훈련받았던 동일훈련직종으로의 재입학은 수료 후 3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 **훈련수당은 언제 지급해 주나요?**
  - 훈련수당은 월 1회, 매월 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직업능력개발원 입학시 기숙사 생활은 의무로 해야 하나요?**
  - 기숙사 생활이 의무는 아니며 본인이 통학을 희망하는 경우 통학도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1. 지원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지원 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 2. 지원내용

- 훈련기간(3~7주) 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훈련준비금 4만원 및 훈련수당 1일 1만 7천원을 지급하고, 재해 보험가입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1588-1519)

memo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

##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 일자리 지원

장애로 인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기관 등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매월)
일반형 일자리		시·군·구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 보조 업무를 하는 전일제 일자리 지원	일 8시간, 주 5일	126만 1천원
복지일자리	미취업 등록 장애인	도서관, 우체국, 학교, 복지관 등에서 공공형(사서보조, 우편물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일자리 지원	주 14시간, 월 56시간	33만 8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	일 5시간, 주 25시간	103만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발달 (지적, 자폐) 장애인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노인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지원	일 5시간, 주 25시간	79만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시·군·구청 단위로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융자·지원

### 1.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2. 지원내용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비용을 융자해 드립니다.  
※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에서 4% 지원, 융자금 5천만원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 동안 고용
-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 통근용 승합자동차, 편의시설의 설치·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당 3억원 한도,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중증 장애인 1천 5백만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www.kead.or.kr)

#### 자주 하는 질문

- **융자금 대출가능 은행과 사업주 부담금리는?**  
- 기업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담보종류(부동산, 보증서, 신용)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금리에서 4%를 차감한 금리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통근용 승합자동차 지원조건은?**  
- 장애인근로자를 2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4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2년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해야하고 5년간 차량을 용도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 직업능력 개발지원 훈련수당

### 1. 지원대상

15세 이상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

### 2. 지원내용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중증 및 여성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이 훈련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거주지 인근의 훈련기관을 이용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 훈련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유형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민간위탁훈련기관 훈련 및 공단에서 승인하는 개별적 훈련이 있습니다.  
※ 민간위탁훈련기관 훈련생은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하여 월 16만원~월 27만원 훈련수당 지원, 개별적 훈련을 승인받은 훈련생은 100만원 한도로 실제 훈련에 소요되는 훈련수강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www.kead.or.kr)

#### 자주 하는 질문

- **학원비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 공단은 구직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훈련과정(국가기술 자격 및 면허 취득과정, 공무원 시험준비과정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훈련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100만원 한도로 실제 소요되는 훈련수강료의 전액을 지원(전체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음)합니다.  
개별적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할지역 지사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1. 지원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2.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10억  
원 한도)  
※ (지원요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지원에 따른 신규고용  
인원을 7년간 유지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www.kead.or.kr)

알려드립니다

#### ●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이상 고용할 것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 06

##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이 취업과 창업,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19만 5,717원) 이상 100%(4인 기준 439만 1,434원)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2. 지원내용

자립자금을 연 3%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구분	대출한도 (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 대출	1천 2백만원 이내	(무보증대출요건)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보증대출	2천만원 이내	(보증인 요건) 연간 재산세 납세 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원 이상	
담보대출	5천만원 이내	-	

#### ※ 대여목적

- ① 생업자금
  - ②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⑥ 자기개발훈련비
  -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⑧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 단, 생활기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용자 불가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근로지원인 지원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내용**  
직장에서 장애인이 하는 일 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일을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주 40시간, 1일 8시간 (월 약 172시간) 한도로 지원합니다.  
※ 지원받는 시간당 3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후 신청(☎1588-1519)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훈련수당)

- 지원대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구분	내용	실시기관	훈련수당
직업적응 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훈련, 작업환경적응 및 직업능력향상 훈련 실시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월 7만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과 연계가 가능한 기술 훈련 실시 (안마수련, 바리스타, 정보처리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	월 20만원 (훈련준비금 4만원, 1회)

-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731) 및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이용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일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취업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문의 후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2.7%(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임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 근속년수에 따라 월 15~60만원 지원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 최경증 6급(국가유공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4년까지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 : 한국장애인공단 지사 방문, 우편, 전자신청(www.esingo.or.kr)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 www.kead.or.kr)

## 고용관리 비용 지원

- 1.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 작업지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2. 지원내용**  
사업주에게 작업지도원이 지도한 장애인 1인당 월 14만원(단, 최저 임금 미만은 1/2)을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후 신청  
(☎1588-1519, www.kead.or.kr)

## 보조공학 기기 지원

- 1.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 2. 지원내용**  
보조공학기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장애인 1인당 최대 300만원(중증 500만원)까지 무상 지원
  - 장애인 1인당 최대 1,000만원(중증 1,500만원)까지 고용조건부로 지원
  -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1588-1519)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1.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2. 지원내용**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용의 80%(단, 생계급여수급자는 90%)를 지원합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 독서확대기와 같이 장애로 인해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보급품목은 온라인(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
- 3. 신청방법 및 문의**
  - 주민센터, 온라인(www.at4u.or.kr)을 통해 신청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도우미 상담실(☎1588-2670)

알려드립니다

### ● 보급절차

01. 전화상담(1588-2670) 	02. 신청·접수(지자체) 	03. 방문상담(지자체) 
04. 대상자 선정(지자체) 	05. 결과발표 	06. 개인부담금 납부 
07. 기계배송 설치(납품업체) 	08.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09. 보급완료 

# 07

##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로 인한 진료·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재활을 통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장애인 의료비

#### 1. 지원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 2. 지원내용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비급여 항목은 제외)

- 입원 : 본인부담금 전액
- 외래 : 1차 의료기관 750원, 2·3차 의료기관 전액
- ※ 식대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 3. 신청방법 및 문의

의료기관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증빙서류(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보건복지콜센터 ☎129)

#### 알려드립니다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기준 219만 5,717원) 이하이면서 만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 질환자 등

##### ●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신청

###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 1.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 2. 지원내용

지원내용	상세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구간) 적용
산출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등급 1~2급 : 30% 감면 -장애등급 3~4급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 : 1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등록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후 신청(☎1577-1000)

### 장애인 보장구 급여

#### 1. 지원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 구입비용의 90% 지급(품목별 기준액 범위 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전액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 구입비용 전액 지급(품목별 기준액 범위 내)

※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 3. 신청방법 및 문의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후 신청(☎1577-1000)
- 의료급여 수급자 : 시·군·구청 장애인담당부서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애검사비 지원

### 1.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5만원 초과 검사비용 일부지급(최대 10만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원 초과 검사비용 일부지급(최대 10만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일부지급(최대 10만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장애검사비 신청서 1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2. 지원내용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만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천원)를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1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알려드립니다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됩니다.
- 장애인등록진단비 및 검사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뇌병변·심장·시각·청각 장애인

### 2. 지원내용

18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합니다.

구분	세부 지원내용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보행용 보조기구, 식사보조기구(5종),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청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 3. 신청방법 및 문의

장애인보조기구센터(☎1670-5529)

##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 1. 지원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인 만 18세 미만 입양 장애아동

### 2. 지원내용

연간 최대 260만원한도 내에서 본인이 낸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1. 지원대상**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
- 2. 지원내용**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도, 시군구에서 정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발달장애 서비스

- 1. 지원대상**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4인기준 774만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2. 지원내용**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하여 이용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자주 하는 질문

- **반드시 장애등록을 하여야만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장애등록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하여야 함)

## 언어발달 지원

- 1. 지원대상**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이며,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4인기준 619만원) 이하인 가구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2. 지원내용**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등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청능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알려드립니다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

## 발달장애 부모 심리 상담 지원

- 1. 지원대상**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4인기준 774만원) 이하 가구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자녀의 부모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지원내용**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월 16만원의 개인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을 6개월간 제공(회당 50분, 월 4회 이상의 개별상담 가능)  
\* 최초 6개월 종료전 이용자가 이용 연장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 연장제공 가능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이용

-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2. 지원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을 지원합니다.  
※ 전국 17개소 운영(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도, 시군구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하여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보건복지콜센터 ☎129)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 1. 지원대상**  
1~3급 중증장애인, 고령,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가 필요한 등록장애인
- 2. 지원내용**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재활보조기구 대여·교육, 자가관리교육, 장애가족 지지 프로그램 제공, 재활스포츠 등 사회참여 지원, 방문, 한방 등 다른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국 142개 보건소에서 이용 가능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08

##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

- 1. 지원대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64세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 2. 지원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합니다.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	추가급여
1등급	106만 3천원 (약 118시간)	독거, 취업, 취학여부, 출산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라 9만 1천원~246만 4천원 추가 지급
2등급	85만 2천원 (약 94시간)	
3등급	64만 2천원 (약 71시간)	
4등급	43만원 (약 47시간)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문의 후 신청(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콜센터 ☎129)

### 자주 하는 질문

- 한번 신청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년간 지원되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 부터 3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1. 지원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2. 지원내용**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를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 1. 지원대상**  
무주택 세대주인 등록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도 포함)
- 2.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우선공급하여 1층에 우선배정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LH공사 문의 후 신청(LH공사 ☎1600-1004)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 1. 지원대상**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2. 지원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 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가구당 최대 380만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등록장애인
- 2. 지원내용**  
장애유형별(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상담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애인 생활 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 1. 지원대상**  
실비입소 이용시설로 지정(전국 22개소)된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저소득 장애인
- 2. 지원내용**  
입소비 중 매월 286,000원을 시군구에서 시설로 직접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장애인 거주시설 및 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서비스

- 1. 지원대상**
  -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4인기준 774만원)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 2. 지원내용**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 후견심판절차비용 실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지정된 공공후견 교육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을 월 10만원 지급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무료 법률 구조제도

-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2. 지원내용**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면제, 법률상담, 형사사건 변호, 소송서류 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또는 전화로 문의(☎132)

## 방송소의 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사업 (시·청각 장애인용 TV)

- 1. 지원대상**  
시·청각 장애인(저소득층 우선 지원)
- 2. 지원내용**  
장애인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TV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에 문의 후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http://tv.kcmf.or.kr) 신청

알려드립니다

- 시·청각 장애인용 TV란 ?
  - 장애인 방송(자막·화면해설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자막의 크기·위치·색상을 쉽게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을 갖고 있는 TV

##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1.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 2. 지원내용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합니다.

- ※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차량등록담당부서(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1.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 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2. 지원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여,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애인운전 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 1. 지원대상

- 1~4급의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1~6급의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운전능력평가를 통해 운전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 2.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합니다.
-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장애특성 및 변화된 신체조건에 맞는 운전적응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 상담 후 신청

### 자주 하는 질문

- 운전면허는 있는데 장애를 입은 경우 운전교육이 가능한지요?  
- 네 가능합니다. 단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CPAD검사 후 합격 유/무에 따라 운전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은 지체·뇌병변·청각 1~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5~6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면 운전교육이 가능합니다.
-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에서는 1종보통과 2종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9

##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 지원대상  
1~3등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 2. 지원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500만원까지 면제해 드립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세무서 문의(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중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1. 지원대상  
1~3급(시각 4급은 지역에 따라 상이)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2. 지원내용  
취득세(중전 등록세 포함)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행정자치부 콜센터 ☎02-2100-3399)

### 상속세 상속공제

-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2. 지원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장애인이 75세에 이르기까지 남은 연도에 500만원을 공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세무서 문의(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2. 지원내용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세무서 문의(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2. 지원내용  
장애인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10

##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주변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통해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주간보호시설 주소지 관내 주민 우선지원
- 2. 지원내용**  
장애인이 시설을 내방하면 낮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장애인담당부서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애인 복지관

-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관 주소지 관내 주민우선지원
- 2.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장애인담당부서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애인 체육시설

-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등
- 2. 지원내용**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장애인담당부서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 장애인 심부름센터

- 1. 지원대상**  
시각장애인 등
- 2. 지원내용**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민원업무대행(관공서 등), 직장출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 등 각종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문의(☎02-6925-1114)

### 수화통역 센터

- 1. 지원대상**  
청각·언어장애인 등
- 2. 지원내용**  
관공서, 법률·의료기관 등 이용시 출장 수화통역, 일반인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농아인협회 문의(☎02-461-2261~2)

# 11

## 각종 요금을 감면 받고 싶을 때

일상 속의 다양한 요금 감면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해 드립니다.

### 요금감면 제도

감면 내역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
방송요금	시·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통신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월 3만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로 신청 (미래창조과학부 ☎1335)
교통비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항공(등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감면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감면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대한항공 ☎1588-2001)
	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50% 감면 - 4~6급 장애인 20% 감면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감면 내역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중증장애인(1~3급) 50% 감면 - 경증장애인(4~6급) 30% 감면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 책임보험 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할인카드발급은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은 주민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이용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 공공요금	1~3급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	주민센터(환경부 ☎1577-8866)
		• 전기요금 감면(월 8천원 한도, 1~3급)	한국전력(☎123)
문화활동비	등록 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입장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과태료	1~3급 장애인	• 질서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1~3급)	사이버경찰청(☎182)
기타	등록 장애인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1544-7788)



# 보훈대상자 지원서비스

국가를 위해 희생이나 공헌을 하셨나요?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 01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 보훈급여금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그 유족
- 2.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따라 매월 16만 7천원~50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 1. 지원대상**  
상이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 2. 지원내용**  
상시 간호수당은 매월 222만 8천원, 수시 간호수당은 매월 148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 1. 지원대상**  
보상금을 지급받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및 유족 사망 시 그 친족 중 상속인
  - 2. 지원내용**  
대상에 따라 112만 7천원~326만 8천원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이 때 사망일시금은 보상금의 종결적 급부 및 장제보조비 성격을 가집니다.
- | 구분                 | 금액                  |
|--------------------|---------------------|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천원 ~ 326만 8천원 |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천원 ~ 226만 1천원 |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천원 ~ 170만 4천원 |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천원            |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종결시) | 112만 7천원            |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중 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람
- 2. 지원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수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  
• 3인 이하 가족 : 16~22만원  
• 4인 이상 가족 : 21~27만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무공 영예수당

### 1.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이며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 2. 지원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구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금액	28만원	27만 5천원	27만원	26만 5천원	26만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 1. 지원대상

애국지사

### 2. 지원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3급	4급	5급	
월지급금액	155만원	128만원	115만원	105만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영주귀국 정착금

### 1. 지원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 유족: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 2. 지원내용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7천만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1.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영주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7천만원
	2. 정착금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가.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4천 5백만원
	나.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	5천 5백만원
	다.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7천만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유족 수권자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재해보상금

### 1. 지원대상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전투경찰 등의 유족과 전투 또는 복무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전투경찰 등\*

\* 전투경찰 등 : 전투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 2. 지원내용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전투경찰 등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전투경찰 등이 전투 또는 복무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주 하는 질문

● 6.25때 군인으로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형님의 사망보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군인사망급여금은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해 군인이 사망한 당시의 유족 중 동일 호적내의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순위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사망사실이 유가족에게 통지된 지 5년이 경과되거나 호적이 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정리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6.25때 사망하였으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최근 유해발굴 등으로 전사사실을 안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국방부 훈령 '순직재분류자 등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지침'에 의거 지급)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확인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해위로금

### 1.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2. 지원내용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인명피해 : 사망·실종 500만원, 부상 30만원
- 주택피해 :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100만원
- 공동이용시설 피해 : 대규모 500만원, 일부 250만원
- 기타 재산 피해 : 20~50만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6·25자녀수당

### 1. 지원대상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로 '98.1.1. 이후 연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선순위 자녀 1인

### 2. 지원내용

- 제적자녀(유족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미성년자녀로 보상을 받던 중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종결된 사람)에게 매월 114만 1천원을 지급합니다.
- 승계자녀(최장 '97년도까지 모 또는 조부모가 보상금을 지급받다가 사망 후 순위가 변경된 사람)에게 매월 97만원을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 1. 지원대상**  
월남전 및 국내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2. 지원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 | 구분 | 고도       | 중등도      | 경도      |
|----|----------|----------|---------|
| 금액 | 147만 9천원 | 114만 9천원 | 92만 3천원 |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 1. 지원대상**  
월남전과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 제대한 사람 중 고엽제로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사람 중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2. 지원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 | 구분 | 고도   | 중등도     | 경도      |
|----|------|---------|---------|
| 금액 | 83만원 | 61만 3천원 | 40만 2천원 |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참전 명예 수당

-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2. 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0만원, 장제보조비\*는 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장제보조비는 국립묘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 1. 지원대상**
  - 국비진료 대상 :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환자 등과 같이 신체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대상 :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가족 등 직접적인 희생이 없는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 2. 지원내용**
  - 국비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감면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30~6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종류	내용
보훈병원진료	5개 보훈병원 직접 진료
응급진료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통원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전문위탁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 등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 곤란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하여 받는 진료
위탁병원진료	보훈병원이 없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비진료대상자와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이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
보철구 지급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취형·장착해 드리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 3. 신청방법 및 문의**
  - 보훈병원 :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② 보훈지원-지원안내 → ③ 의료지원 → ④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02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 생활안정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 재가복지 지원

#### 1. 지원대상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곤란한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국가보훈처에서 생활수준 기준을 정함)

\* 만 65세 미만일지라도 보훈병원 가정간호 대상자 등은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2. 지원내용

주 1~2회 보훈심검이가 자택을 방문하여, 취사·세탁·청소 등 가사 활동을 돕고, 식사 수발, 병원동행, 노인·의료용품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memo

.....  
.....  
.....  
.....  
.....  
.....  
.....  
.....  
.....  
.....

###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1. 지원대상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정도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 2.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 80%
- 그 외 유공자 및 유족(자녀 제외) : 40%(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60%)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자 : 60%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보훈요양원 이용 본인 부담금 지원

#### 1. 지원대상

65세 이상 또는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 요양등급(시설 업소)판정을 받은자

※ 단, 주간보호는 재가급여가 가능한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2. 지원내용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합니다.(시설급여 200인, 주간보호 25인)

※ 공훈과 희생의 정도와 생활수준 고려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지원 (80/60/40/0%)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요양원에 입소 신청

- 수원보훈요양원 ☎031-240-9000
- 광주보훈요양원 ☎062-602-5800
- 김해보훈요양원 ☎055-340-8585
- 대구보훈요양원 ☎053-606-3000
- 대전보훈요양원 ☎042-829-3000
- 남양주보훈요양원 ☎031-579-7000

## 국가유공자 등 양로지원

### 1. 지원대상

- 의지할 곳이 없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자녀 제외)
- 상이유공자(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
- 그 외 기타 유공자 및 유족(남성 65세 이상, 여성 60세 이상)

### 2. 지원내용

- 양로지원대상자가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시까지 의식주를 제공 합니다.
- 사망시 창훈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유공자 등 양육지원

### 1. 지원대상

의지할 곳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단, 독립유공자는 미성년 손자녀 포함)

### 2. 지원내용

성년이 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대학까지 교육을 지원하며 생필품, 취업알선 및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보훈병원 진료

### 1. 지원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가족

### 2. 지원내용

대상	세부 지원내용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비 전액 지원(단,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li> <li>· ※ '12.7월 이후 등록신청한 7급 상이자 중 부상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시 20% 본인부담</li> <li>· 보훈병원 보장구센터를 통해 팔보조기, 보청기 등 보철구 지원</li> </ul>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제대군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부담 진료비 30~60% 감면</li> </ul>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memo

## 위탁병원 진료 (시·군별 지정 의료 기관)

### 1. 지원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유족 1인

### 2. 지원내용

대상	세부 지원내용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 부분과 비급여 일부 항목(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li> <li>※ '12년 7월이후 등록 신청한 7급 상이자 중 부상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시 20% 본인부담</li> </ul>
건강보험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상금 수권유족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 감면</li> <li>※ 약제비 제외</li> </ul>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 대상자 LPG 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고·중·경도)

### 2. 지원내용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1. 지원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2. 지원내용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 1.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

### 2. 지원내용

주택구입·임차(전·월세)·개량, 사업(창업), 농토구입, 생활안정자금 등을 연 2~3% 저금리로 300~6,000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20년 상환)

###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은행 문의 후 신청(☎1599-9999)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 '12.7. 이후 등록된 상이 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 부모 제외

### 2. 지원내용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비를 지원합니다.

• 공무원·교사 임용시험, 어학시험 등을 위한 학원 수강료 연 50~100만원 지급

※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지원방법 등 확인

•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수강시 장려금 월 4만원 지급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 '12.7. 이후 등록된 상이 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 부모 제외

### 2. 지원내용

취업지원 방법에는 국가기관 및 일반기업체 등에 특별채용 및 특별고용하는 방법과 채용시험 시 가점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특별채용 : 국가기관 등 일반직공무원\* (기능군무원 포함) 정원의 15%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채용

\* 일반직공무원 : 방호, 운전, 위생 등 일부 특별채용 직렬

• 보훈특별고용 : 일반기업체 등의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상 (공기업체 등은 1% 가산)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의무고용

• 가점지원 : 채용시험 응시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5~10%를 가점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 1. 지원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하고 전·퇴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

### 2. 지원내용

국가기관, 공기업, 기업 등에 보훈특별고용 추천을 받아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지원

- 1. 지원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2. 지원내용**  
주택구입, 사업, 생활안정 등을 위한 비용을 연 3~4% 저금리로 300~6,000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3~20년 상환)
-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은행 문의 후 신청(☎1599-9999)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 1. 지원대상**  
군인연금을 받지 않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제대군인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구제)를 결정한 사람
- 2. 지원내용**  
변호사 보수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 지원과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 1. 지원대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19년 6개월 미만) 제대군인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을 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 2. 지원내용**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25만원씩 6개월간 지급합니다.  
※ 수급기간 중에 취·창업을 한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3. 신청방법 및 문의**
  -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vnet.go.kr>)
  - 서울센터(☎1588-2339)
  - 경기북부센터(☎1577-3883)
  - 경기남부센터(☎1577-3883)
  - 부산센터(☎1577-7339)
  - 대전센터(☎1577-2339)
  - 대구센터(☎1577-6339)
  - 광주센터(☎1577-8339)

# 03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 -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국가보훈 대상자 등 보훈장학금 지급

- 1. 지원대상**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 2. 지원내용**  
대학원 장학금은 학기별 최대 115만원, 특수교육대상자 장학금은 학기별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 대상자 등 수업료 등 면제

- 1. 지원대상**  
중·고·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 지원내용**  
대학과정(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기관 포함)까지 입학금, 수업료 등을 면제해 드립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 대상자 등 학습보조비 지급

- 1. 지원대상**  
중·고 과정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중·고·대학 과정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 2. 지원내용**  
중학교 12만원, 고등학교 14~18만원, 대학교 23만원, 특수학교 52~70만원의 학습보조비를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보조

- 1. 지원대상**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으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복학 한 자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일정 생활수준(국가보훈처에서 생활수준 기준을 정함) 이하인 사람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 2. 지원내용**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특수한 상황이나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신가요?

-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 북한이탈 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 01

##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지원

위기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 청소년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

#### 1. 지원대상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만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손자녀)
- 위기상황을 경험한 가족(성폭력, 학교폭력, 자살(시도), 재난 등으로 정신적 상처를 경험한 사람 및 그 가족)

#### 2.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한 학습도우미 및 생활가사도우미 파견,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의 피해가족에 대한 상담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 건강가정지원 센터 운영

#### 1. 지원대상

가정 생활에 도움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 2. 지원내용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아버지 교육 등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교육을 제공합니다.  
※ 신혼기·중년기·노년기 부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 가정 내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상담을 실시합니다.  
※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이혼상담 등
-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 가족캠프, 가족사랑의날 행사, 건강가정캠페인 등

#### 3. 신청방법 및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1577-9337),  
홈페이지 <http://www.familynet.or.kr>

memo

## 법원연계 이혼위기 가족회복 지원

- 1. 지원대상**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아동
- 2. 지원내용**  
이혼상담, 교육, 가족캠프, 아동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이혼위기 가족이 겪는 문제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 **면접교섭권이란?**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599-3360)
  - 부산 건강가정지원센터(☎051-330-3470)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053-745-4501~2)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032-875-1361)
  - 대전 건강가정지원센터(☎042-252-9989)
  - 안산YMCA(☎031-410-3570)
  - 순천여성상담센터(☎061-753-9900)

##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이용

- 1. 지원대상**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 2. 지원내용**  
병원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 및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통한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4인 기준 228만 3,546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2. 지원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5만원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지급
- 3. 신청방법 및 문의**
  - 주민센터 신청,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 상담(withmom.mogef.go.kr)

알려드립니다

● **한부모가족이란?** 복지서비스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4인 기준 228만 3,546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2. 지원내용**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매학년 초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신청☎1544-9654

##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주택분양·임대)

- 1. 지원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2. 지원내용**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의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입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NH공사 신청☎1600-1004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1.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부자 및 모자가정, 미혼모자가정 등)
- 2. 지원내용**  
주거(숙식) 제공, 자립(직업·양육·인성교육 등), 의료혜택 등을 지원합니다.  
※ 시설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다름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부서 신청(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법률지원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법률 서비스)

- 1.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2. 지원내용**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대리소송 등을 지원합니다.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자녀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지원
  -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 :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상대방이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 지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문의 후 신청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3만 4,860원) 이하 이면서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 2. 지원내용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15만원 지급
- 검정고시학습비 :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 시 최대 154만원까지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지급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급(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 자립지원촉진수당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 이면서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원 지급

### 3. 신청방법 및 문의

- 주민센터 신청,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 온라인 상담(withmom.mogef.go.kr)

#### 자주 하는 질문

- 청소년 한부모가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아동 양육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현재 10만원을 받고 있다면 추가로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받은 가구는 아동 1인당 15만원을 받게 되며, 소득이 중위소득 52%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아동 1인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 1.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의 산모

### 2. 지원내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후에 최대 120만원 내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드립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 :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본부로 우편 송부(☎1566-0133)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본부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17층

#### 자주 하는 질문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memo



## 02

###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 1. 지원대상**  
만 6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2. 지원내용**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문화 아동의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거 지원 (주택 특별공급)

- 1. 지원대상**  
무주택 다문화가족
- 2. 지원내용**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LH공사 문의 후 신청(☎1600-1004)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19만 5,717원) 이하 저소득층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2. 지원내용**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자활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참조(20p)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긴급복지지원 제도

-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고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다음의 국내체류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중이거나, 또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이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한국인 자녀·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2. 지원내용**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동절기 연료비, 해산·장제·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참조(24p)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 1. 지원대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한국국적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국민 포함)
- 2. 지원내용**  
우리말과 문화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과정(최대 415시간), 한국사회이해과정(50시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혜택 : 이수자는 귀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 대기시간 단축
    - ※ 전국 304개 기관에서 운영
- 3. 신청방법 및 문의**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신청
  - 외국인종합지원센터(☎1345)

##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 지원

- 1. 지원대상**  
한국으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
- 2. 지원내용**  
청소년 초기적응 지원,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적응 및 문화통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여성가족부 문의 후 신청(☎02-2100-6280)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 1.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 다문화·탈북 학생
- 2. 지원내용**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관련 상담·놀이 학습, 한국문화 체험 등의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 ※ (활동시간) 연간 150시간 내외, 1일 4시간, 주당 10시간 이내(방학 중 20시간 이내)
- 3. 신청방법 및 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신청,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문의

### 자주 하는 질문

-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학생 멘토의 급여는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지급되므로, 학부모님께서 별도로 부담하실 비용은 없습니다.

## 신소외계층 정보화교육

- 1.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2. 지원내용**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홈페이지 제작법 등 집합·방문 정보화 교육(무료)을 지원합니다.
  - ※ 집합 정보화교육(3~12월), 방문 정보화교육(3~11월)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담당 문의 후 신청(☎064-909-3013)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 2. 지원내용**  
언어발달 정도 평가 후 어휘, 대화, 읽기 등 언어발달 촉진교육을 제공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  
※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다누리앱에서 인근센터 확인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1. 지원대상**
  - 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 :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만 19세 미만)
  - 방문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임신·출산·영아기/유아기/아동기)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2. 지원내용**
  - 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자녀양육 관련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녀생활서비스 :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를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자녀생활서비스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신청)  
※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다누리앱에서 인근센터 확인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
- 2. 지원내용**
  -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이용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합니다.
  - 체류 관련 정보 제공, 임신 및 출산과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  
※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다누리앱에서 인근센터 확인

## 결혼이민여성 인턴 운영

- 1. 지원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결혼이민여성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여성
- 2. 지원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한 사업장에 3개월 간 인턴 채용 지원금(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정규 고용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사업장 및 결혼이민여성에게 각각 6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 후 신청(☎1544-1199)

##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1. 지원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결혼이민여성
2. 지원내용  
결혼이민여성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합니다.(과정당 2~3개월)
3. 신청방법 및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 후 신청(☎1544-1199)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2. 지원내용  
한국 생활정보, 통역(3자 통화 가능), 갈등해결 상담, 폭력피해 긴급 지원을 365일 24시간 제공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http://www.liveinkorea.kr)), 다누리앱

##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

1. 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2. 지원내용  
일시보호, 상담, 의료, 법률, 출국 및 취업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다누리콜센터 문의(☎1577-1366)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2.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취업교육 및 연계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멘토링, 자조모임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  
※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http://www.liveinkorea.kr)), 다누리앱에서 인근센터 확인

## 탈북학생 교육 지원

- 1. 지원대상**  
초·중등학교 재학 탈북학생(북한, 제3국 출생)
- 2. 지원내용**  
탈북학생의 학습지도, 사회·문화 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멘토링\* 지원 및 기초 학력증진 등에 활용 가능한 탈북학생용 표준(보충)교재\*\* 보급  
\* 1인당 80만원 상당 교육 지원(15년 기준)  
\*\* 국어·수학(초1~2학년), 국어·사회·수학·과학(초3~6학년, 중1~3학년)
- 3. 신청방법 및 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문의

### 자주 하는 질문

-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탈북학생 멘토링과 탈북학생용 표준(보충)교재 지원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문의해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memo

.....

.....

.....

.....

.....

.....

.....

.....

.....

.....

## 03

###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 1.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지원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법률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 가정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문의 후 신청
  - 성폭력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문의 후 신청

##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1. 지원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
- 2. 지원내용**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비 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여성긴급전화 문의(☎1366)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1.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 2.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 • 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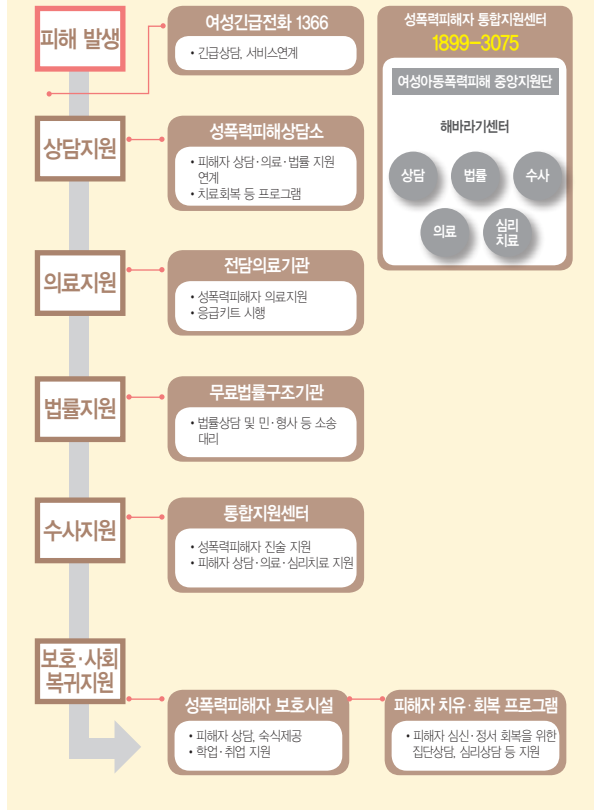
서비스	내용
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 피해의 치료, 임신여부의 검사,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성병 감염 여부 검사,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 질환 치료,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치료 보호에 소요된 비용 지원</li> <li>피해로 입원한 환자 중 간병인 필요시 간병비 지원</li> <li>사업 기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전담의료기관 등</li> </ul>
법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민사·가사·형사사건 변호를 무료로 제공</li> <li>사업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li> <li>※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법률지원 신청</li> </ul>
돌봄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세 미만 아동피해자 혹은 성폭력 피해자의 13세 미만 자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연령 제한없이 1~3급)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가 돌봄서비스 이용시 비용 지원</li> <li>사업수행기관 :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지자체</li> </ul>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 피해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li> <li>사업기관 :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li> </ul>

## 3. 신청방법 및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1899-3075)

알려드립니다

## ● 성폭력피해자 지원 체계도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1. 지원대상**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 2. 지원내용**
  -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의 피해신고·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연계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직업훈련, 피해회복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 1.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자
- 2. 지원내용**
  - 폭력피해자에 대한 긴급 상담과 구조를 지원합니다.
  -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 병원,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에 연결해 드립니다.
  -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게 긴급피난처를 제공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지원

- 1. 지원대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광역 17개, 기초 226개)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내 의료, 교육, 사법, 아동여성보호관련 단체 및 시설 대표로 구성된 민관협력체계
- 2. 기능 및 역할**
  - 협력체계 구축
    - 아동·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
    - 아동·여성안전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예방지원
    -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 안전사업
    - 안전진단 및 안전지원(안전귀가 등)
    -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위험환경 정비
    - 취약아동·여성보호지원
  - 위기관리
    - 폭력위기 및 피해아동·여성 사례개입 및 관리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해당 지자체

memo

# 04

##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및 가족, 사업주에게 경제적 보상 등의 도움을 드립니다.

###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 1. 지원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 2. 지원내용

구분	지원세부내용
요양 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환자에게 진찰·검사·약제·보조기·처치·수술 등 지원, 재활보조기 198개 품목 구입 및 수리비용 지급
휴업 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16년 고시 예정)
장해 급여	치료를 마친 후 몸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연금 : 1급(평균임금 329일분) ~ 7급(138일분) • 장해일시금 : 1급(평균임금 1,474일분) ~ 14급(55일분)
유족 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평균임금 365일분의 52~67%)
간병 급여	산재로 인한 상병 치료 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16년 고시 예정)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의비(평균임금 120일분), 직업훈련지원비 등 지급

알려드립니다

#### ● 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도 영구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www.kcomwel.or.kr

###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 1. 지원대상

산재장해인(제1~7급), 상병보상연금수령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 2. 지원내용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www.kcomwel.or.kr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 1. 지원대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산재장해인(제1~9급), 상병보상연금수령자,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 2. 지원내용

1세대당 2,000만원까지 각 용자종류별 한도 이내에서 대출해 드립니다.

구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	차량구입	사업자금
용자액	1,000만원			1,500만원			

※ 이자율 및 상환방법 :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www.kcomwel.or.kr

자주 하는 질문

####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 한가요?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요양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를 함께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산재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 1. 지원대상**
  - 경기케어센터 : 60세 이상 산재장해등급 제1~3급 결정자
  - 강원케어센터 : 60세 이상 진폐장해인
- 2. 지원내용**
  - 경기케어센터 : 산재장해인에게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강원케어센터 : 진폐장해인에게 주거에 필요한 시설 및 일상생활의 편의 등 전문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 경기케어센터(☎031-359-0514)
  - 강원케어센터(☎033-580-5262)

##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 1. 지원대상**

산재요양이 끝났으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재장해인 등
- 2. 지원내용**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의학적 조치를 제공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www.kcomwel.or.kr)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1. 지원대상**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산재장해등급 1~12급 판정자 또는 판정 예상자
- 2. 지원내용**

직업훈련비용(최대 12개월 이내 6백만원), 훈련수당(최대 1일당 최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www.kcomwel.or.kr)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 1. 지원대상**
  - 다치기 전의 직장에 복귀를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제1~12급)
  - 산재장해인(제1~12급)을 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2. 지원내용**
  - 근로자 : 직장복귀에 필요한 정보, 작업능력평가 및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 : 직장복귀지원금(월 30~60만원, 최대 12개월), 직장적응훈련비(월 45만원, 최대 3개월), 재활운동비(월 15만원, 최대 3개월)를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www.kcomwel.or.kr)

##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 1. 지원대상**  
산재장해인 1~14급으로서 훈련 직종 또는 취득 자격증이나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자영업으로 창업 희망자
- 2. 지원내용**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전세점포를 지원합니다.  
※ 연리 2% 이율, 최장 6년, 월세 200만원 이내
-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www.kcomwel.or.kr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 1. 지원대상**  
산업재해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
- 2. 지원내용**  
산업재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재활멘토링,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등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www.kcomwel.or.kr

## 요양급여 (재활보조 기구)

- 1. 지원대상**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되어 보조기가 필요한 자
- 2. 지원내용**
  - 지급기준 :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 보조기구의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 비용을 지급합니다.
  - 지급품목\* : 재활보조기구 103개 품목(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 83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품목 20개)  
\* 지급품목 종류 및 기준금액 확인방법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산재의료서비스 > 공단운영연구소 "재활공학연구소"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품목 안내" 클릭
  - 지급시기 : 치료 종결시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내구 기한이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품목별 내구 기한 경과 시마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 중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 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 신청☎1588-0075)

알려드립니다

### ○ 요양비(보조기) 청구시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구분	구비서류	청구권자	비고
현금급여 (요양비)	• 요양비청구서 또는 대체지급청구서 •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산재근로자 사업주 (대체지급시)	의료기관 날인
현물급여 (진료비)	• 진료비 청구서 및 개인별 진료비명세서 •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의료기관 대표	진료비 청구 (서면·EDI· 토탈월)

##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 1.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중 월보수가 140만원 미만 인 근로자와 사업주
- 2. 지원내용**
  -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차등 지원합니다.
    - 신규가입자 :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 ※ 신규가입자란 최초 가입자, 피보험기간이 3년이상 단절된 자(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를 말함
    - 기가입자 :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 기가입자란 시행일 현재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자, 3년 이내 한 번이라도 보험 가입이력이 있는자, 한 번이라도 보험료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함
- 3. 신청방법 및 문의**
  -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http://www.kcomwel.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http://www.nps.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http://www.4insure.or.kr)

### 자주 하는 질문

- **4대 보험 모두 지원 되나요 ?**  
- 4대 보험 중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당면 지원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보험료지원 신청이 있어야 신청일이 속한 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05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1. 지원대상**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2. 지원내용**  
건강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보험료 경감 22%(복지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최대 28%(농식품부)  
※ 소득·재산수준(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1. 지원대상**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2. 지원내용**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월 최대 40,950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 농업인 안전보험

- 1. 지원대상**  
만 15~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해당농림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사업자)
- 2. 지원내용**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NH농협생명(☎1544-4000), KB손해보험(☎1544-0114) 문의 후 신청

## 취약농가 인력지원 (가사도우미)

- 1. 지원대상**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취약가구 및 읍면 소재 경로당
- 2. 지원내용**  
연간 최대 12일, 경로당은 최대 24일까지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도우미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지역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635)

##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 1. 지원대상**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으로  
·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최근 3개월 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한함)
- 2. 지원내용**  
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1일 인건비 6만원 중 4만 2천원(70%) 지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지역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635)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 1. 지원대상**  
농업인(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포함), 어업인 또는 임업인으로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예) 2헥타르 이하 농지 소유(또는 임차)한 농업인, 20톤 이하 어선 소유 또는 어업인으로 종사하는 자, 10헥타르 이하의 산림과 토지를 소유(또는 임차)한 임업인 또는 일정규모 이하의 양축인 등
- 2. 지원내용**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15년은 3.39%) 및 저축장려금 지급률\*, 이자소득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15년 기준) 저소득 농어민은 연 6.0%~ 연 9.6%, 일반 농어민은 연 1.5%~ 연 2.5%
- 3. 신청방법 및 문의**
  -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방문 신청
  - 농·축협 고객행복센터(☎1588-2100)
  - 수협 고객만족센터(☎1588-1515)
  - 산림조합(☎02-3434-7222)

### 자주 하는 질문

- 농림어업인이나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  
- 저축가입대상이라도 타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이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농지를 소유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저축가입이 가능한가요?  
- 결혼으로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저축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 내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는 없으나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입이 가능한가요?  
-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하시려는 분 명의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소유(또는 임차)한 농지가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 1.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평균성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학생

순위	대상자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li> <li>•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가구 자녀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li> <li>•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 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li> </ul>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농어업 미종사)</li> </ul>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추천자</li> </ul>

### 2. 지원내용

당해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을 무이자로 용자해드립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1599-2000)

## 도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

### 1. 지원대상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지원내용

여객선 운임의 20%를 지원해 드립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여객선 승선 시 주민등록증 제시  
(해양수산부 ☎044-200-5773~4)

##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 보험

### 1. 지원대상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해상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어선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2. 지원내용

본인부담 보험료를 최대 7%까지 지원합니다.  
※ 위 지원과는 별도로 지역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수협 문의 후 신청(☎1588-1515)

알려드립니다

- 어선원보험 당연(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 어선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선원보험의 당연(의무)가입대상이 2016년 1월 1일부터 '4톤 이상 어선 소유자'로 확대됩니다.

##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

### 1. 지원대상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

### 2. 지원내용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보육시설)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문의(농림축산식품부 ☎044-201-1580)

##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 수당

### 1. 지원대상

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 2. 지원내용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 06

##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지원해 드립니다.

### 의사상자 지원

1. 지원대상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2. 지원내용
  - 구조행위를 한 해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그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의뢰, 고궁 등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 memo

---

---

---

---

---

---

---

---

---

---

---

---

---

---

---

---

---

---

---

---

---

---

---

# 07

## 북한이탈 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북한이탈 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회보장 지원

1.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2. 지원내용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연금특례\*를 지원합니다.  
\* 연금특례 : 보호결정 당시 만 50~60세 미만인 자는 60세 이후 가입 기간이 5년이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문의  
생계급여·의료급여는 시·군·구청, 연금특례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 후 신청

### 정착금 지원

1.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2. 지원내용
  - 1인 기준 700만원의 기본 정착금을 지급합니다.
  - 노령, 장애, 장기 질병에 대해 최대 1,540만원까지 추가 지급 합니다.
  -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돕는 장려금을 최대 2,440만원을 지급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통일부 하나원 문의 후 신청(☎031-670-9323)

## 교육 지원

- 1. 지원대상**  
북한 이탈주민
- 2. 지원내용**
  - 북한 학력을 국내 학력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 장학금, 학습지원, 진로 및 진학상담, 법률제도, IT 등 교육을 돕습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학력 인정은 통일부(☎02-2100-5785)로, 그 외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1577-6635)으로 문의 후 신청

## 교육비 지원

- 1. 지원대상**  
초·중·고·대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 이탈주민
- 2. 지원내용**  
초·중·고·대학교 교육비와 대학 특례 편입학을 지원 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통일부 하나원 문의 후 신청(☎031-670-9323)

## 취업 지원

- 1.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
- 2. 지원내용**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고용지원금(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4년간 지급합니다. ※ '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탈북민에게 적용
- 3. 신청방법 및 문의**  
사업주가 통일부 하나원 문의 후 신청(☎031-670-9323)

## 자산형성지원 (미래행복 통장)

- 1. 지원대상**  
'14.11.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탈북민 중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중인 근로소득자
- 2. 지원내용**  
탈북민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취업지원센터(☎02-3215-5881~4)

## 주택알선 지원

- 1.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 2. 지원내용**  
영구·국민 임대주택을 알선(하나원 퇴소시 1회에 한함)하고,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통일부 하나원 문의 후 신청(☎031-670-9323)

# 08

##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노숙인, 석면피해자, 사할린한인, 원폭피해자, 위안부피해자, 진폐근로자, 한센피해자,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노숙인 등 복지지원

- 1. 지원대상**  
노숙인
- 2. 지원내용**  
주거, 급식, 의료,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문의 후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석면피해자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 1. 지원대상**  
석면광산, 석면공장 인근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 및 유족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 지원내용

피해안정질병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 조위금	
원발성 악성종피종	1,314,130원	2,481,640원	37,224,600원	
원발성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946,170원		18,612,300원	
석면폐증			1급	
			2급	12,408,200원
	3급		6,204,100원	

※ 모든 석면질병의 요양급여(치료비) 지원(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 120~500만원 한도)

- 3. 신청방법 및 문의**  
시·군·구청 신청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석면피해구제 홈페이지(www.adrc.or.kr)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 1. 지원대상**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장애인 자녀  
※ 사할린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는 2세로 통칭
- 2. 지원내용**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매월 7만 5천원)를 지급합니다.
  - 신규 입국한 영주귀국자에 대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을 지원합니다.(2인 1가구 기준단가 17,700천원)  
※ 국토교통부(나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비용을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 1세·2세 항공료(실비) 및 집기비품(1,400천원)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9, 3514) 및 대한적십자사 특수사업팀 (☎02-3705-3795)

알려드립니다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사업이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기 정착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외교부(대한적십자)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영주귀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원폭 피해자 지원

- 1. 지원대상**  
원폭피해자
- 2. 지원내용**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 진료비 :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수첩 미소지자에 한해 지원
  - 진료보조비 : 매월 10만원,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월 5만원
  - 장제비 : 150만원
  - 건강검진비 : 연 1회(35만원)
- 3. 신청방법 및 문의**  
대한적십자사 문의 후 신청(☎02-3705-3705)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 1. 지원대상**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2. 지원내용**  
신규등록시에는 특별지원금으로 4,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며, 이후 매월 생활안정지원금(126만원 지원, '16년 기준)과 간병인 필요 시 실비를 지원해드리며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문의 후 신청(☎02-2100-6427~6433, www.hermuseum.go.kr)

## 진폐근로자 보호

- 1. 지원대상**  
광업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로서 진폐에 걸린 근로자
- 2. 지원내용**  
진폐건강진단비용, 진폐위로금,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진폐 건강진단	• 진폐건강진단비 • 2차 정밀진단시 1일 5만원, 통원교통비	광업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
진폐 위로금	• 진폐장해판정시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1,040일분 • '10.11.21. 이전 장해판정자는 장해위로금(59~884일분), 진폐로 사망시 유족위로금(780일분)	진폐로 장해등급 판정시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 진폐장해근로자의 중·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	진폐장해 근로자의 자녀

- 3. 신청방법 및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한센 피해자 지원

- 1. 지원대상**  
한센인피해자
- 2.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 의료지원금 : 피해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간병비, 보조장구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에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 개발제한 구역 내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 1. 지원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 세대
- 2. 지원내용**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생활비를 세대당 연간 60만원 지급합니다.
-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민센터(보건복지콜센터 ☎129)

##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 1.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난민자녀 등으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2. 지원내용**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일정 범위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료 등(회 500만원 범위 내)
- 3. 신청방법 및 문의**
  - 각 시·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담당부서 (세종, 울산 제외), 사업수행의료기관
  - 보건복지콜센터 ☎129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은?**  
동 사업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을 하며, 외래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단,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풍수해보험

- 1. 지원대상**  
주택 소유자·세입자 또는 온실 소유자
- 2. 지원내용**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호우, 대설 등) 및 지진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55~8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 76%  
\* 보험기간 : 1년  
\* 보상내용 : 전파, 반파, 소파, 침수, 온실 비닐파손
- 3. 신청방법 및 문의**
  -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풍수해보험 판매 5개 손해보험사  
동부화재(☎02-2100-5103), 현대해상(☎02-2100-5104), 삼성화재(☎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

알려드립니다

### ● 보험료·보험금 예시(주택, 온실)

#### ① 주택(소유, 온실)

\* 충남 홍성군 90% 보장형 기준(단독주택 80㎡, 온실 : 철재파이프하우스 500㎡)

구분	연간보험료	정부지원	국민부담	보험금(전파)
주택	일반가입자		44,800원	36,600원
	차상위계층	81,400원	61,900원	19,500원
	기초생활수급자		70,500원	10,900원
온실	239,500원	131,800원	107,700원	434만원

#### ② 주택(세입자동산) \* 충남 예산군 90% 보장형 기준(단독주택 80㎡)

구분	연간보험료	정부지원	국민부담	보험금(전파)
일반가입자		11,600원	8,700원	
차상위계층	20,300원	15,700원	4,600원	7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7,800원	2,500원	

\*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 1. 지원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2. 지원내용

- 치료비 : 5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연 1,200만원, 총 3,000만원의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 심리치료비 : 정신과 치료비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제공합니다.
- 생계비 : 매달 범죄피해자 1인 50만원, 2인 가족 80만원, 2인 초과하는 가족의 경우 1인당 20만원씩 증액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합니다.
- 학자금 : 초등학교 50만원, 중학교 80만원, 고등학교·대학교 100만원을 학기당 1회씩 최대 연2회 지원합니다.
- 장례비 :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300만원을 상한으로 실비를 지급합니다.

알려드립니다

#### ●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외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했을 경우

### 3. 신청방법 및 문의

검찰청 신청(국번없이 ☎1301)

memo

#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한눈에 찾아보세요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복지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콜센터☎1544-9654	20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제도	한국전력공사 ☎123 등	23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복지지원제도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24
	취약·위기가족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사업본부 ☎02-3479-7616	26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26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 ☎1600-1004	27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 ☎1600-1004	27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 ☎1600-1004	28
	행복주택 공급	LH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28
	장기전세주택 임대	시·군·구청, LH공사 ☎1600-1004	29
	기존주택 매입임대 등	시·군·구청, LH공사 ☎1600-1004	29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시·군·구청, LH공사 ☎1600-1004	30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시·군·구청, LH공사 ☎1600-1004	31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시·군·구청, LH공사 ☎1600-1004	31
	주거환경 개선자금 대출	우리은행 ☎1588-5000 국토교통부 ☎1599-0001	32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32
	슬레이트 처리 지원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33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그린홈)	지자체 및 LH공사에서 자체 선정	34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34
	신재생에너지 지원	한국에너지관리공단 ☎031-260-4114	35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35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36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306 환경부 ☎044-201-6763	37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21	38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주택구입시)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39	
	보증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39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080-800-9001	40	
	버팀목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40	
	주거안정 월세대출 (순수 월세 대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080-800-9001	41	
	주거안정월세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41	
	전세자금 보증	각 은행 콜센터	42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43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44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희망드림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45	
	미소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1600-3500	45	
	햇살론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46	
	바꿔드림론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47	
	새희망홀씨	한국이지론 ☎1644-1110	47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48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상담센터 ☎1600-5500	48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49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양곡할인	보건복지콜센터 ☎129	49
사랑의 그린PC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50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 고객센터 ☎1544-3412	51	
스포츠강좌이용권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9	52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1350	56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1350	57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노동부 ☎1350	58	
자활근로		보건복지콜센터 ☎129	59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일모아 홈페이지 www.ilmoa.go.kr	59	
희망키움통장(I, II)		보건복지콜센터 ☎129	60	
내일키움통장		보건복지콜센터 ☎129	61	
근로장려금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62	
자녀장려금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63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64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고용노동부 ☎1350	65
	정년연장 지원	고용노동부 ☎1350	65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 ☎1350	66
	임금피크제 지원금	고용노동부 ☎1350	66
	장년 취업 인턴제	고용노동부 ☎1350	67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042-480-4387~8	68
	중장년취업아카데미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5	68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고용노동부 ☎1350	70
	청년 취업아카데미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72	70
	해외취업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9997	71
	일·학습병행제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23	72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고용노동부 ☎1350	72
	취업사관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73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76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보건복지콜센터 ☎129	77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77
	영양플러스	보건복지콜센터 ☎129	78
	임신·출산진료비지원(의료급여)	보건복지콜센터 ☎129	78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88-8700, 롯데카드 ☎1899-4282	79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회서비스 바우처 ☎1566-0133	80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80
	요양비(출산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81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공단 ☎1355	8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81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82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83
	육아휴직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1350	84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 하고 싶을 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유산·사산 포함)	고용노동부 ☎1350	8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고용노동부 ☎1350	85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지원금 (비정규직 재고용)	고용노동부 ☎1350	86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지원금 (육아휴직 등 부여)	고용노동부 ☎1350	86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고용노동부 ☎1350	87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 하고 싶을 때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설치비 :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02-2670-0411~9, 부산 ☎051-320-8181~6, 대전 ☎042-870-9110~6) 운영비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과	88	
	만 0~5세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행복콜센터 ☎1566-0233	89	
우리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에듀콜센터 ☎1544-0079	90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행복콜센터 ☎1566-0233	91	
	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돌봄서비스상담전화 ☎1577-2514	92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이용 아동)	보건복지콜센터 ☎129	93	
	시간제 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콜센터 ☎1661-9361	93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1577-0756	94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94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복지콜센터 ☎129	95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보건복지콜센터 ☎129	9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96	
	영양플러스	보건복지콜센터 ☎129	9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96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97	
	영유아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98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98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 검진)	보건복지콜센터 ☎129	99	
	취학전 아동 단체 볼스 도포	보건복지콜센터 ☎129	99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00
		입양아동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00
	방과 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할 때	초등돌봄교실	재학 중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101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0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02-330-2831~3	102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고교학비 지원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10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103
	급식비 지원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104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104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 ☎129	105
	국가장학금(1, 2유형, 다자녀 (셋째아이 이상))	한국장학재단 ☎1599-2000	106
	국가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 ☎1599-2000	107
	드림장학금	한국장학재단 ☎1599-2000	108
	예술체육비전장학금	한국장학재단 ☎1599-2000	108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한국장학재단 ☎1599-2000	109
	인문100년장학금	한국장학재단 ☎1599-2000	110
	취업후상환학자금(돈돈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1599-2000	111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1599-2000	112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한국장학재단 ☎1599-2000	113
	학교우유급식	소속학교 신청	114
아동급식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1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재학중인 학교 및 교육청	115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 ☎182	116
	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용	아동학대신고 ☎112	116
	학대피해 아동 쉼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17
	아동발달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보건복지콜센터 ☎129	118
	드림스타트	보건복지콜센터 ☎129	118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740	119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 상담전화 ☎1388	120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 상담전화 ☎1388	1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상담전화 ☎1388	121
	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02-3144-1223	122
	성매매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여성긴급전화 ☎1366	122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량해소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청소년 상담전화 ☎1388	123
	Wee 클래스 상담지원	Wee프로젝트 특임센터 ☎02-2057-8701~7	12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전화 ☎1388	124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 상담전화 ☎1388	124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아동·청소년에게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청소년 상담전화 ☎1388	12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안전진단사업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콜센터 ☎1899-1021	126
	청소년 국제교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95	127
	청소년 활동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3	129
	지역청소년활동정책진흥사업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130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02-722-2585	132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36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보건복지콜센터 ☎129	137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콜센터 ☎129	138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사업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043-719-7387	139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40
	중증질환 재난의료비 한시적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40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의료급여 제도	보건복지콜센터 ☎129	141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보건복지콜센터 ☎129	142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환제	보건복지콜센터 ☎129	142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콜센터 ☎129	143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43
	선택 병·의원제	보건복지콜센터 ☎129	144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을 때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145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146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46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47
질병의 조기 발견을 원할 때	건강검진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48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	150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150
	재가암 관리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15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콜센터 ☎129	151
	노숙인 및 취약계층 일교울중독문제 관리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152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53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53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기초연금 제도	국민연금공단 ☎1355	156
	노후준비서비스	국민연금공단 ☎1355	157
	노후긴급자금 대부	국민연금공단 ☎1355	157
	주택연금 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158
	은퇴금융 아카데미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159
어르신들이 일지리를 원할 때	노인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60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노인복지관·경로당 이용	별도 신청없이 이용	161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16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 02-704-4332	162
	고령층 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064-909-3015	162
	온라인 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온라인정보화교육 ☎064-909-3021	163
치매가 걱정될 때	치매 검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64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165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때	노인실명 예방	보건복지콜센터 ☎129	166
	노인틀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166
	노인임플란트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167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168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 129	169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 129	170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 129	170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 ☎129	171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요금감면 제도	감면내역별 문의처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안할때	장애인연금	보건복지콜센터 ☎129	176
	장애수당	보건복지콜센터 ☎129	177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콜센터 ☎129	177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장애인이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78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78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79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79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건복지콜센터 ☎129	180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건복지콜센터 ☎129	18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181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교육부 ☎044-203-6954	182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82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교육부 ☎044-203-6562	183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 ☎044-203-6560	183
	장애인 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도우미 상담실 ☎1588-2670	184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국립특수교육원 정보지원과 ☎041-537-1485	185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86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88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189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운자·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90
	직업능력개발지원 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91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9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콜센터 ☎129	193
장애인이 사회 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근로지원인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9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훈련수당)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731	194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이용	보건복지콜센터 ☎129	195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95
	고용관리 비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96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196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도우미 상담실 ☎1588-2670	197
	장애인의료비	보건복지콜센터 ☎129	198
장애인에게 의료 및 재활 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99
	장애인 보장구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199
	장애검사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00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00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장애인보조기구센터 ☎1670-5529	201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01
	청각 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02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장애인에게 의료 및 재활 지원이 필요할 때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129	202
	언어발달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03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03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보건복지콜센터 ☎129	204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204
	장애인활동지원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콜센터 ☎129	205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보건복지콜센터 ☎129	206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NH공사 ☎1600-1004	206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N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207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보건복지콜센터 ☎129	207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0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129	208
	무료 법률구조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209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사업(시·청각 장애인용 TV)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209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21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보건복지콜센터 ☎129	210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02-901-1553	211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21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중선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행정자치부 ☎02-2100-3399	212
	상속세 상속 공제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213
	중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213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별도 신청없이 지원	21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건복지콜센터 ☎129	214
	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콜센터 ☎129	214
장애인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혜택을 받고 싶을 때	장애인 체육시설	보건복지콜센터 ☎129	215
	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6925-1114	215
	수화통역센터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2	215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 대상자일 때 (보훈급여금 지원)	요금감면 제도	주민센터 등	216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0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0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1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1
	무공영예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2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2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 대상자일 때 (보훈급여금 지원)	영주귀국 정착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3
	재해보상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4
	재해위로금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5
	6.25자녀 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5
	고엽제환자 2세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6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6
	참전명예수당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6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7
	재가복지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8
	민간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29
	보훈요양원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훈요양원에 입소신청</li> <li>수원보훈요양원 ☎031-240-9000</li> <li>광주보훈요양원 ☎062-602-5800</li> <li>김해보훈요양원 ☎055-340-8585</li> <li>대구보훈요양원 ☎053-606-3000</li> <li>대전보훈요양원 ☎042-829-3000</li> <li>남양주보훈요양원 ☎031-579-7000</li> </ul>	229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 대상자일 때 (생활안정 지원)	국가유공자 등 양로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0
	국가유공자 등 양육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0
	보훈병원진료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1
	위탁병원진료 (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2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3
	교통시설 이용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3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	국민은행 ☎1599-9999	234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4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5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5
	장기복무제대군인 대부지원	국민은행 ☎1599-9999	236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6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 ☎1588-2339	237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 대상자일 때 (교육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장학금 지급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8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업료 등 면제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8
	국가보훈대상자 등 학습보조비지급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9
	장기복무제대군인 수업료보조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39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지원)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242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243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02-599-3360 부산건강가정지원센터 ☎051-330-3470 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구지부 ☎053-745-4501~2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인천지부 ☎032-875-1361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 ☎042-252-9989 안산YMCA ☎031-410-3570 순천여성상담센터 ☎061-753-9900	244
	권역별 미혼모·부자 가정가판 이용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244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245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246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주택분양·임대)	나공사 ☎1600-1004	24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247
	법률지원(자녀양육비이행지원 법률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247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248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사회서비스 바우처 ☎1566-0133 보건복지콜센터 ☎129	249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50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나공사 ☎1600-1004	250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보건복지콜센터 ☎129	251
	긴급복지지원 제도	보건복지콜센터 ☎129	251
	사회통합프로그램(KIP)	외국인종합지원센터 ☎1345	252
	북한이탈 및 다문화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 ☎02-2100-6280	252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한국장학재단 ☎1599-2000	253
	신 소외 계층 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담당 ☎064-909-3013	25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5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54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55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255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256	
다누리콜센터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56	
이주여성보호시설 이용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57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57	
탈북학생 교육 지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문의	258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259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259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신고 ☎1899-3075	260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262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	262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지원	해당지자체	263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64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6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65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경기케어센터 ☎031-359-0514 강원케어센터 ☎033-580-5262	266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66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67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67	
	산재근로자 창업접점 지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68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68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69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70	
	농어업인 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7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1355	271
		농업인 안전 보험	NH농협생명 ☎1544-4000 KB손해보험 ☎1544-0114	272
		취약농가 인력지원(가사도우미)	농협중앙회 ☎02-2080-5635	272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농협중앙회 ☎02-2080-5635	272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농·축협 고객행복센터 ☎1588-2100	273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장학재단 ☎1599-2000	274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해양수산부 ☎044-200-5773~4	27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수협은행 ☎1588-1515	275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580	275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보건복지콜센터 ☎129	275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의사상자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76	

##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 기준 서비스 목록

구분	사업명	문의처	페이지
북한이탈 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사회보장 지원	국민연금공단 ☎1355	277
	정착금 지원	통일부 하나원 ☎031-670-9323	277
	교육 지원	학력인정 : 통일부 ☎02-2100-5785 그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577-6635	278
	교육비 지원	통일부 하나원 ☎031-670-9323	278
	취업 지원	통일부 하나원 ☎031-670-9323	278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취업지원센터 ☎02-3215-5881~4	279
	주택알선 지원	통일부 하나원 ☎031-670-9323	279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80
	석면피해자 지원 (석면 피해 구제급여)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280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대한적십자사특수사업팀 ☎02-3705-3795	281
	원폭 피해자 지원	대한적십자사 ☎02-3705-3705	28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여성가족부 ☎02-2100-6427~6433	282
	진폐근로자 보호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83
	한센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83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284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284
	풍수해보험	동부화재 ☎02-2100-5103 현대해상 ☎02-2100-5104 삼성화재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285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검찰청 ☎1301	286	

### 임신·출산

구분	사업명	페이지	
임신준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6	
	임신기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83
		영양플러스	78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77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79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	78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150
출산비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8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7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81	
출산이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78	
	요양비(출산비) 지원	81	
	출산비용 지원	80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9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9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81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95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9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85	
	육아종합지원센터	94	
	육아휴직 급여 지원	84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82	
	출산 전·후 휴가급여(유산·사산 포함)	85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86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86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87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4	

## 영유아

구분	사업명	페이지	
보육비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1	
	가정위탁아동 지원	100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250	
	만 0~5세 보육료 지원	89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90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93	
	시간제 보육료 지원	93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179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180	
	장애아동 양육수당	180	
	장애아동수당	177	
	건강	건강검진 제도	148
		건강보험 제도	136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97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9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96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95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146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95	
언어발달 지원		203	
영유아 건강검진		98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취학전 아동 조기시력 검진)		99	
취학전아동 단체 불소 도포		99	

## 영유아

구분	사업명	페이지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94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275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16
	아이돌봄 서비스	92
	육아종합지원센터	9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81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88
	입양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아동지원		100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201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78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4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51
	온라인 정보화교육	16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96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6

### 아동·청소년

구분	사업명	페이지	
보육비지원	장애아동 시간간접형 보육료 지원	180	
	장애아동수당	177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245	
건강	건강검진 제도	148	
	건강보험 제도	136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97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 치료비지원)	123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146	
교육	고교학비 지원	103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104	
	급식비 지원	10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03	
	스포츠타점이용권	52	
	온라인 정보화교육	163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179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8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4	
	지역아동센터 지원	101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13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02	
	초등돌봄교실	101	
	학교유유급식	114	
	교육_역량강화	청소년 국제교류	127
		청소년 특별 지원	120
		청소년 활동지원	129

### 아동·청소년

구분	사업명	페이지
보호(돌봄/안전)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1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81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25
	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용	116
	학대피해아동쉼터	117
입양	가정위탁아동 지원	100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82
	입양아동지원	100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201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78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4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51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6
자립	드림스타트	118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18
심리지원	WEE 클래스 상담지원	123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122
	청소년성문화센터	122
	청소년전화 1388	124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119
특수상황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120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24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21

## 청년

구분	사업명	페이지	
교육	국가근로장학금	107	
	국가장학금 [I, 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106	
	드림장학금	108	
	예술체육비전장학금	108	
	온라인 정보화교육	163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09	
	인문100년장학금	110	
	교육_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113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111	
고용	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72	
	내일배움카드제	58	
	일·학습병행제	72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70	
	청년 취업아카데미	70	
	취업사관학교	73	
	취업성공패키지(I 유형, II 유형)	57	
	해외취업지원	71	
	주거	기존주택 매입임대	29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30
행복주택 공급		28	
주거_대출		버팀목대출보증	40
	버팀목전세자금대출	40	
	전세자금 보증	42	
	주거안정 월세대출	41	
	주거안정월세대출보증	41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6	
건강	건강검진 제도	148	
	건강보험 제도	136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145	

## 중장년

구분	사업명	페이지
고용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64
	내일배움카드제	58
	사회공헌 활동 지원	69
	임금피크제 지원금	66
	장년 취업 인턴제	67
	정년연장 지원	65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66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59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68
	취업성공패키지(I 유형, II 유형)	57
생활지원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44
	근로장려금	62
	긴급복지지원제도	24
	자녀장려금	63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6
주거	공공임대주택 공급	28
	국민임대주택 공급	27
	기존주택 매입임대 등	29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30
	영구임대주택 공급	27
	장기전세주택 임대	29
주거_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39
	버팀목대출보증	40
	버팀목전세자금대출	40
	보증자리론	39
	전세자금 보증	42
	주거안정 월세대출	41
	주거안정 월세대출보증	41
교육	온라인 정보화교육	163
건강	건강검진 제도	148
	건강보험 제도	136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145
기타	노후준비서비스	157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244

## 노령층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기초연금 제도	156	
	긴급복지지원제도	24	
	노후긴급자금 대부	157	
	노후준비서비스	157	
	은퇴금융 아카데미	159	
	주택연금 제도	158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6	
	건강검진 제도	148	
건강	건강보험 제도	136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139	
	노인실명 예방	166	
	노인입플란트 지원	167	
	노인틀니 지원	166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170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68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145	
	치매 검진 지원	164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65	
	고용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65
		노인 사회활동 지원	160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61	
사회공헌 활동 지원		69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68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59	
주거	공공임대주택 공급	28	
	국민임대주택 공급	27	
	기존주택 매입임대	29	
	영구임대주택 공급	27	

## 노령층

구분	사업명	페이지
주거	장기전세주택 임대	29
	행복주택 공급	28
주거_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39
	버팀목대출보증	40
	버팀목전세자금대출	40
	보증자리론	39
	전세자금 보증	42
	주거안정 월세대출	41
	주거안정 월세대출보증	41
	돌봄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153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170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169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171
취약농가 인력지원(가사도우미)		272
사회참여		고령층 정보화교육
	노인복지관·경로당 이용	161
	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	162
	온라인 정보화교육	163

## 장애인

구분	사업명	페이지
건강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203
	발달재활서비스	202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201
	장애검사비 지원	200
	장애인의료비	198
	청각 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202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183
양육	아이돌봄 서비스	92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179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17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81
	장애아동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180
	장애아동 양육수당	180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78
	장애아동수당	177
교육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183
	발달장애 공공후견 서비스	208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시·청각 장애인용 TV)	209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82
	장애인 정보화교육	184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211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85
주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207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206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4
	무료 법률구조제도	209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210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12
	장애인 요금감면 제도	216
	의료급여 제도	141
	장애수당	177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99
	장애인 등록진단비	200
	장애인 상속세 상속 공제	213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208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21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93

## 장애인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13
	장애인연금	176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중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21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13
	보조공학기기 지원	196
돌봄 (안전, 활동지원)	수화통역센터	215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206
	요양급여(재활보조기구)	269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18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207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201
	장애인 심부름센터	21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20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14
	장애인 체육시설	215
	장애인 활동지원	205
	장애인보장구 급여	199
	장애인복지관	214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197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150	
임신출산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4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78
	출산비용 지원	80
고용	고용관리 비용 지원	196
	장애인 일자리 지원	189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186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이용	195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192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용자·지원	190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	195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18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194

## 한부모

구분	사업명	페이지
양육	법률지원(자녀양육비이행지원 법률 서비스)	247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245
교육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5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248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246
주거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주택분양·임대)	24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247
생활지원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	242
	긴급복지지원제도	24
	의료급여 제도	141
돌봄 (안전, 활동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이용	244
	취약·위기가족지원	26

## 저소득층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37
	근로장려금	62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제도	23
	긴급복지지원제도	2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0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51
	양곡할인	49
	의료급여 제도	141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43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142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142
	자녀장려금	63
	새희망홀씨	47
	생활지원_자금대여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생활지원_출산	출산비용 지원	80
건강	재가암 관리	151
교육	고교학비 지원	10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5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104
	급식비 지원	104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0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03
	사랑의 그린PC	50
	스포츠강좌이용권	52
	아동급식지원	114
	학교우유급식	114
건강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43



### 저소득층

구분	사업명	페이지
고용	자활근로	59
	취업성공패키지(I 유형, II 유형)	57
고용_자립	내일키움통장	6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118
	희망키움통장(I, II)	60
주거	공공임대주택 공급	28
	기존주택 매입임대	29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30
	영구임대주택 공급	27
	장기전세주택 임대	29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31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31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	37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34
	슬레이트 처리 지원	33
주거환경개선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35
	에너지바우처	36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38
	주거환경 개선자금 대출	32
	돌봄 (안전, 활동지원)	취약·위기가족지원

### 다문화(새터민)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4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277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277
	의료급여 제도	141
	다누리콜센터	256
생활지원_기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255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52
	이주여성보호시설 이용	257
	자신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279
보육	다문화 아동 보육료 지원	250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253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254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257
북한이탈 및 다문화청소년 지원		252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278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278
사랑의 그린PC		50
신 소외 계층 정보화교육		253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132
탈북학생 교육 지원	258	
고용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256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255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278
주거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	279
	다문화 가족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250

## 건강

구분	사업명	페이지	
의료비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259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8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76	
	만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98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0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 치료비지원)	12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96	
	산정특례 제도	140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95	
	선택 병·의원제	144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145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146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284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43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142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142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201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46	
	건강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138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139
장애인 활동지원		205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150	
건강_노인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53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153	
	노인실명 예방	166	
	노인임플란트 지원	167	
	노인틀니 지원	166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68	

## 건강

구분	사업명	페이지
건강_노인	치매 검진 지원	164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65
건강_영유아아동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97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95
	영유아 건강검진	98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취학전 아동 조기시력 검진)	99
	취학전아동 단체 불소 도포	99
건강증진	재가암 관리	15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51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150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24
심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203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	150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상담센터) 운영	119

## 고용

구분	사업명	페이지	
고용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65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64	
	사회공헌 활동 지원	69	
	자활근로	59	
	장년 취업 인턴제	67	
	장애인 일자리 지원	189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59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70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188	
	해외취업지원	71	
노인	노인 사회활동 지원	160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68	
취업훈련	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72	
	내일배움카드제	58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267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267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235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186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이용	195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6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194	
	직업능력개발지원 훈련수당	191	
	청년 취업아카데미	70	
	취업사관학교	73	
	취업성공패키지(I 유형, II 유형)	57	
	고용안정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44
		근로장려금	62
		근로지원인 지원	194
실업급여		56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284	

## 고용

구분	사업명	페이지
고용안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85
	육아휴직 급여 지원	84
	일·학습병행제	72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43
	임금피크제 지원금	66
	자녀장려금	63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196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원	195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270
	정년연장 지원	65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66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45
	출산 전·후 휴가급여(유산·사산 포함)	85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86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86
창업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87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268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192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용자·지원	190

## 주거

구분	사업명	페이지
주거	공공임대주택 공급	28
	국민임대주택 공급	27
	기존주택 매입임대	29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30
	긴급복지지원제도	2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0
	영구임대주택 공급	27
	장기전세주택 임대	29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206
	다문화 가족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250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31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31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주택분양·임대)	246
	행복주택 공급	28
	주거_수리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		37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34
슬레이트 처리 지원		33
신재생에너지 지원		35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35
에너지바우처		36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38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32
주거환경 개선자금 대출		32
주거_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39
	버팀목대출보증	40
	버팀목전세자금대출	40
	보증자리론	39
	전세자금 보증	42
	주거안정 월세대출	41
	주거안정월세대출보증	41
주거_보호	이주여성보호시설 이용	257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207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208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1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247

## 교육

구분	사업명	페이지
미취학	가정양육수당 지원	91
	가정위탁아동 지원	100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275
	만 0~5세 보육료 지원	89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90
	시간제 보육료 지원	93
	아이돌봄 서비스	92
초중고	고교학비 지원	103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104
	급식비 지원	104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05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2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03
	사랑의 그린PC	50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93
	지역아동센터 지원	101
	초등돌봄교실	101
	탈북학생 교육 지원	258
	학교우유급식	114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246
장애인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	183
	언어발달 지원	203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82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182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179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179
	장애인 정보화교육	184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185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183

## 교육

구분	사업명	페이지
노인	고령층 정보화교육	162
다문화	다문화 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25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254
	신 소외 계층 정보화교육	253
기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126
	온라인 정보화교육	163
	일·학습병행제	72
	장기복무제대군인 수업료보조	239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107
	국가장학금[1, 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106
	드림장학금	108
	예술체육비전장학금	108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09
	인문100년장학금	110
대부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113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111

## 문화

구분	사업명	페이지
노인	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	162
아동청소년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51
	스포츠강좌이용권	52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13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4
	청소년 활동지원	129
장애인	장애인 체육시설	215

## 서민금융

구분	사업명	페이지
생계자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44
	노후간접자금 대부	157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용자	265
	새희망홀씨	47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43
	햇살론	46
	주거자금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버팀목대출보증		40
버팀목전세자금대출		40
전세자금 보증		42
주거안정 월세대출		41
주거안정월세대출보증		41
주거환경 개선자금 대출		32
고용지원	장애인고용 시설장비 용자·지원	190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45
학자금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113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111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48
	미소금융	45
	바꿔드림론	4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48

##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구분	사업명	페이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6.25자녀 수당	225
	고엽제환자2세수당	226
	고엽제후유의증수당	226
	교통시설 이용 지원	233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233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장학금 지급	238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업료 등 면제	238
	국가보훈대상자 등 학습보조비지급	239
	국가유공자 대부 지원	234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220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220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221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221
	국가유공자 등 양로지원	230
	국가유공자 등 양육지원	230
	국가유공자 등 재해위로금	225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235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지원	234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227
	독립유공자 등 영주귀국 정착금	223
	무공영예수당	222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229
	보훈대상자 위탁병원진료 (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232
	보훈병원진료	231
	보훈요양원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229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222
	재가복지지원	228
참전영예수당	226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대부지원	236
	장기복무제대군인 수업료보조	239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구분	사업명	페이지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235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237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236
의사상자	의사상자 지원	276
	재해보상금	224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281
원폭피해자	원폭 피해자 지원	282
위안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28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259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259
	성매매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122
	성폭력 피해자 지원	260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지원	263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26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262
	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용	116
	학대피해아동쉼터	117
	산재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		268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265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265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267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267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268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266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266
농어업인, 도서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27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271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207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113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구분	사업명	페이지
농어업인, 도서민	농업인 안전 보험	272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275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275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27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275
	취약농가 인력지원(가사도우미)	272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272
입양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82
	입양아동지원	100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201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178
노숙인	노숙인 등 복지 지원	280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	152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138
	산정특례 제도	140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	140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46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KIPP)	252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284
결핵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147
석면피해자	석면피해자 지원(석면 피해 구제급여)	280
진폐	진폐근로자 보호	283
한센	한센 피해자 지원	283
풍수해	풍수해보험	285
알코올 등 중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51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284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286

## 주요기관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주요기관	연락처
BC카드	☎1899-4651
KB손해보험	☎1544-0114
LH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LH공사	☎1600-1004
NH농협생명	☎1544-4000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SH공사	☎1600-3456
Wee프로젝트특임센터	☎02-2057-8701~7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검찰청	☎1301
경찰청실종아동찾기센터	☎182
고용노동부	☎1350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국립재활원장애인운전자원과	☎02-901-1553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740
국립특수교육원정보지원과	☎041-537-148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은행	☎1599-9999
국세청세미래콜센터	☎126
국토교통부	☎1599-0001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주요기관	연락처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농·축협고객행복센터	☎1588-2100
농림축산식품부	☎1577-1020
농협중앙회	☎02-2080-5635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	☎042-252-9989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	☎032-875-1361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대한적십자	☎02-3705-3705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동부화재	☎02-2100-5103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02-599-3360
롯데카드	☎1899-4282
문화누리고객센터	☎1544-3412
미소금융중앙재단	☎1600-3500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02-6369-8987
부산건강가정지원센터	☎051-330-347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577-6635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0133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삼성카드	☎1588-8700

주요기관	연락처
삼성화재	☎02-2100-5105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1397
성폭력피해신고	☎1899-3075
수협은행	☎1588-1515
순천여성상담센터	☎061-753-9900
시간제보육콜센터	☎1661-9361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신용회복상담센터	☎1600-5500
실종아동보호전문기관	☎02-777-0182
아동학대신고	☎112
아이돌봄서비스상담전화	☎1577-2514
아이행복콜센터	☎1566-0233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 관리기준콜센터	☎1899-1021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에듀콜센터	☎1544-0079
여성가족부	☎02-2100-6000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외국인종합지원센터	☎1345
우리은행	☎1588-5000
육아종합지원센터	☎1577-0756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02-722-2585
장애인보호조기센터	☎1670-5529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
제대군인지원센터	☎1588-233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주요기관	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	☎080-800-9001
청소년상담전화	☎1388
하나원	☎031-670-9323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02-3144-1223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 사업본부	☎02-3479-7616
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2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	☎02-704-433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843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6925-1114
한국에너지관리공단	☎031-260-4114
한국에너지재단	☎02-6913-2121
한국이치론	☎1644-1110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73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95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306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행정자치부	☎02-2100-3399
현대해상	☎02-2100-5104



**펴낸 곳**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정보원

**발행일** 2016년 1월

**디자인** (주)활로컴

ISBN 979-11-86408-01-8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562-01



대한민국 정부